

의안번호	2220523
의 퇴 인	김대식의원
회 답 일	2026.9.11.
추계번호	26D337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제1항(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의료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함)에의 위탁, 스톱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제9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의료기관등에의 위탁 조치결정을 받은 스톱킹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다만, 스톱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제1항(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2. 상세 사유

□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등 위탁(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스톱킹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거나 의료기관등에 위탁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스톱킹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스톱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스토킹행위자 중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등 위탁 조치를 받는 사람의 수와 그 중 위탁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수, 개인별 위탁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의 유사 입법례에 따른 비용지원 액수는 다음과 같음

[표 1] 연도별 비용지원 액수: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정·아동보호사건 치료위탁, 상담위탁 비용 지원	671	454	576	562

자료: 대법원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할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등의 위탁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할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스토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안 제9조제1항제7호)

-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로서 스토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조치를 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이수 관리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함
- 다만, 잠정조치로서 신설되는 스토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조치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명령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이루어지고,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집행하고 있어 잠정조치가 신설되더라도 현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법무부는 수강명령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활동 사업에 2027년 총 16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강명령 집행(34억 3,000만원), 기타 교육 및 용품비 등(10억 3,100만원), 각종 심리치료비 등(19억 7,800만원)이 포함됨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